

##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손솔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br>번호 | 19986 |
|----------|-------|

발의연월일 : 2026. 7. 15.

발 의 자 : 손 솔 · 정혜경 · 박민규  
전종덕 · 황운하 · 김종민  
한준호 · 윤종오 · 이용우  
김예지 · 전진숙 · 김남희  
이주희 · 용혜인 · 임미애  
(15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오늘날 반려동물은 많은 사람에게 가족이자 일상의 동반자로 자리 잡고 있으며, 반려동물과 보호자 사이의 유대관계는 일반적인 재산적 가치만으로 평가하기 어려움. 그럼에도 현행법은 반려동물을 압류금지 대상에 명시하고 있지 않아, 채무자의 반려동물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또한 압류가 허용되는 동물이라 하더라도 동물은 고통을 느끼고 생명과 건강을 유지하여야 하는 지각력을 지닌 생명체이므로, 일반 물건과 같은 방식으로 압류·보관·매각 등의 집행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동물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 및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에 속하지 않더라도 그 밖에 영리 목적을 위해 보유하는 것이 아닌 동물

(돼지, 오리, 닭, 파충류 등)을 압류금지 대상에 포함하여 보호자와 반려동물 사이의 유대관계를 보호하고, 압류가 금지되지 아니한 동물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에도 집행실시자가 해당 동물을 지각력을 지닌 생명체로서 존중하며 동물의 생명·건강 및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5조제17호 및 제195조의2 신설).

##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5조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의 반려동물 및 그 밖에 영리 목적을 위한 보유가 아닌 동물

제19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5조의2(동물에 대한 강제집행의 특칙) 압류가 금지되지 아니한 동물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집행실시자는 해당 동물을 지각력을 지닌 생명체로서 존중하여야 하며, 압류·보관·매각 및 그 밖의 집행절차에서 동물의 생명·건강 및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195조(압류가 금지되는 물건)<br>다음 각호의 물건은 압류하지 못한다.<br>1. ~ 16. (생략)<br><u>&lt;신설&gt;</u> | 제195조(압류가 금지되는 물건)<br>-----<br>-----.<br>1. ~ 16. (현행과 같음)<br>17.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의 반려동물 및 그 밖에 영리 목적을 위한 보유가 아닌 동물<br><u>제195조의2(동물에 대한 강제집행의 특칙)</u> 압류가 금지되지 아니한 동물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집행실시자는 해당 동물을 지각력을 지닌 생명체로서 존중하여야 하며, 압류·보관·매각 및 그 밖의 집행절차에서 동물의 생명·건강 및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 <u>&lt;신설&gt;</u>                                                                |                                                                                                                                                                                                                                                                                    |